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11월 22일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3년 11월 10일

나. 발 의 자: 김현진 의원 외 5명

다. 회부일자: 2023년 11월 10일

라. 상정일자: 제3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5차 회의 상정·의결(2023. 11. 22.)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김현진 의원)

❑ 제안이유

공용차량을 사회적 약자와 공유하여 이를 이동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여가활동에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구민들의 생활편의를 증진시키고 유휴자원을 활용하는 공유경제 정책을 실천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나. 공용차량 공유 이용 대상자(안 제3조)

다. 차량 이용의 신청, 승인 및 제한 등 절차(안 제4조 ∽ 제6조)

라. 공용차량 운전자의 자격요건(안 제10조)

마. 차량 이용자의 준수 사항 및 위반 조치 규정(안 제11조 ∽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나. 협조부서: 행정지원과

다. 입법예고(2023. 11. 10. ~ 2023. 11. 14.)

4.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장석현)

가. 제정 취지

○ 본 조례안은 우리구 공용차량을 사회적 약자와 공유하여 이를 여가활동 등에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구민들의 생활편의를 증진시키고 유휴자원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 내용

○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공용차량을 사회적 약자와 공유하여 이를 이동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여가활동에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생활편의를 증진시키고 유휴자원을 활용한 공유경제 정책을 실천하는 것으로 규정함

○ **안 제2조**는 “공용차량 공유사업”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이나 토요일에 공무에 사용하지 않는 공용차량을 구민에게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으로 하는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음

○ **안 제3조**는 「공용차량 이용대상자의 자격」으로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사유가 해당하는 사람으로 명시함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구성원
2. 「서울특별시 강서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구성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과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가족의 구성원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구성원
1.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 **안 제4조 ∽ 6조**는 공용차량을 이용하려는 자는 사용 기간의 첫날 2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자격 및 이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대상자에게 통보하게 하는 등 차량 이용신청, 승인 및 사용 제한 등의 절차를 규정함

○ **안 제11조 ∽ 12조**는 차량의 이용자는 승인 받은 목적 범위에서 공용차량을 이용하여야 하며 영리 활동 등에 공용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등의 이용자 준수 사항 및 준수 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에 구청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하여 서술하였음

다. 종합 의견

○ 본 조례안은 주말이나 공휴일에 운행하지 않는 공용차량을 이동수단이 필요한 저소득계층 및 다문화·한부모·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취약계층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유휴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관광·문화 등 여가활동과 일상생활에서 차량의 소유가 보편적인 상황임을 고려할 때 공용차량 공유사업을 통해 사회취약계층에게 차량 이용의 편리성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풍요롭고 여유 있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시행령」[1]에서는 이용대상자의 범위를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용대상자의 범위가 적정한지 여부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료율 증가대책, 전담직원 지정, 기타 효율적인 운영방안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생략

7. 심사결과: 원안가결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5조(무상 대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또는 서업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 기간을 정하여 무상으로 소관 물품을 대부할 수 있다.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주민에게 소관 물품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대부하려는 경우

붙임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4조(대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부를 목적으로 한 물품 또는 대부하여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또는 사무에 지장이 없는 물품은 대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물품을 대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물품을 대부한 경우 대부료의 요율, 대부료의 계산방법, 대부료의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